

## 산지일시사용 [허가·신고] [ ]협의요청서 [ ]변경협의요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

협의 구분	[ ] 산지일시사용허가 [ ] 산지일시사용신고
협의요청 기관장	
산지일시사용 목적	
근거법령	

일시사용 산지내역	소재지	번지 외 필지			
	구분	계	보전산지(㎡)		준보전산지(㎡)
			임업용산지	공익용산지	
계					
국유지					
공유지					
사유지					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 유

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[허가·신고] [ ]협의 [ ]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 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  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\* 첨부서류, 수수료, 유의사항: 뒤쪽 참조

	<p>1.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</p> <p>가. 사업계획서(산지일시사용의 목적, 사업기간,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, 입목처리계획, 토석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나. 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.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.</p> <p>다.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라.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 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</p> <p>마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 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</p> <p>바.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」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산림조사서(숲의 종류, 임 상, 나무의 종류, 숲의 나이, 평균나무높이, 입목축적을 포함하고,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·작성 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</p> <p>사. 소나무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중·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(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,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 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</p> <p>아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(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) 1부. 다만,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 지의 면적(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)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 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</p> <p>1)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</p> <p>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사·토목기사·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·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자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) 또는 3)에 해당하는 서류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p> <p>차.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 재해위 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의2서식 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[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(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한다) 이상인 경우로 한정(다만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)하며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자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 면적의 제한 없이 모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]</p> <p>카.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 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</p> <p>2.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</p> <p>가. 사업계획서(산지일시사용의 목적, 사업기간,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, 입목처리계획, 토석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나.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)</p> <p>다.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 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</p> <p>라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 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. 다만,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에 정지실측도를 대신하여 임도설계도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)</p> <p>마.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(폭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)와 복구공중·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(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,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</p> <p>바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) 또는 3)에 해당하는 서류 1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 칩」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사.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 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</p> <p>아.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(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3.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: 변경협의와 관련된 서류</p>
<p>첨부서류</p>	<p>1.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</p> <p>가.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2만원</p> <p>나.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</p> <p>2.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</p> <p>가.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5천원</p> <p>나.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: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 산한 금액</p> <p>3.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: 없음</p>
<p>유의사항</p>	
<p>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</p>	